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상근 예비군 명칭 변경〉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696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덕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6. 10.
3. 회부연월일 : 2025.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 제도로써 ‘비상근 (非常勤) 예비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상근 예비군’ 용어는 상시 근무하지 않는 비정규직 형태의 예비군(Part-time Reserve)을 뜻하는 용어임.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평상시에도 장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우려가 있어 ‘비상근’이라는 복무형태를 명확히 적시 하는 방향으로 명칭을 정립하였음.

그러나 다년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은 비상근 예비군들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비상근”이라는 명칭 자체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들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기본적으로 군 내외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비정규직 형태 (Part-time)로 운영된다는 점과, 장기 비상근 예비군도 최대 180일만 복무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정착되고 있음.

따라서, 연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어 정립이 필요함.

이에 명칭만으로도 임무수행 및 운용형태가 이해될 수 있고 호명하기 쉬우면서 현역 상비군과 다름을 표현하기 위해 기존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을 통해 항상 전투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를 담은 ‘상비(常備)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에서 상비 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3(비상근 예비군 제도) ① 국방부장관은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이하 “ <u>비상근 예비군</u> ”이라 한다)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의3(상비예비군 제도) ① ---- ----- ----- “ <u>상비예비군</u> ”----- -----.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u>비상근 예비군</u> 을 선발한다.	② ----- ----- ----- <u>상비예비군</u> -----.
③ 그 밖에 <u>비상근 예비군</u> 의 정원, 소집 분야, 소집 기간, 선발, 소집 중단, 보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상비예비군</u> ----- ----- ----- --.

-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2014년부터 동원위주 부대의 간부 예비군(육군 79명)을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을 실시한 것에서 시작하여 2021년 12월 「예비군법」 및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30일 이하 단기 소집(단기 비상근예비군)만 가능했던 것을 연간 소집을 180일 장기 소집(장기 비상근예비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집 대상 범위 또한 기존 간부에서 병 직위까지로 확대하여 시행중이며 2025년 현재 약 3,700여명(단기: 3,489명, 장기: 254명) 규모의 비상근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음.

<비상근예비군 운영 개념도>

구분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 (연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 (연 180일 이내)
대상	예비역 병 ~ 소·중령	
운용 직위	•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 * 육군·해병(중·소대장 등), 해군(함장 등), 공군(통제실장 등)	•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 * 주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업무 성격	• 작전계획에 따라 하위 전투제대 현장 지휘, 전투장비·물자관리	•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지속·전문성 업무 •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물자 관리 업무
복무 기간	• 단기간 복무(연간 30일 이내) * 현재 15일 근무	• 장기간 복무(연 180일 이내)

자료: 국방부

□ 개정안은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운영 중인 ‘비상근 예비군’ 명칭을 ‘상비 예비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상근’이라는 명칭에 임시 또는 비정규 등의 한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

하고 있어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 저하를 유발하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봄.

- 연간 2~4일 훈련받는 일반 예비군과는 달리 지원에 의해 일정 기간 추가로 복무·훈련함으로써 신속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발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포괄할 수 있도록 명칭 정립이 필요함.

□ 참고로, 2021년 9월¹⁾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을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²⁾ 논의 시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을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시 복무 개념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그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으로 변경하였음.

□ 국방부는 현행 명칭이 단순히 복무 기간과 형태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시키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

1) 제391회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1.9.9.)

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09281호